

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소라 의원 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147 |
|----------|------|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10월 14일
발 의 자: 이소라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영철, 김용일, 김원태,
김지향, 남궁역, 민병주,
박강산, 박승진, 서준오,
유정인, 이영실, 이용균,
이원형, 이종태, 임규호,
임종국, 한 신, 황철규
의원(18명)

1. 제안이유

-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출산과 육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임
- 현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,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)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, 임신검진휴가의 경우 여성 공무원만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- 그러나 임신검진휴가의 경우 여성 공무원 본인의 휴가만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예비 부모로서 남성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의 임신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시 한정된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 해 제약이 따름
- 이에 임신 출산 및 육아친화적인 조직 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에게도 검진 및 진료 등 병원 동행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공무원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남성 공무원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
동행휴가를 1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29조 제
5항의 신설)

3. 참고사항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5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29조(특별휴가) ① ~ ④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 <p>⑤ ~ ⑭ (생략)</p> | <p>제29조(특별휴가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 <p>⑥ ~ ⑱ (현행 제5항부터 제17항까지와 같음)</p> |

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남성공무원이 검진에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 - 동 개정안 제29조(특별휴가)제5항에 따른 임신검진동행 특별휴가는 제4항의 여성공무원 임신검진휴가와 동일하게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추가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에서 제외함.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계분석관 이홍래

☎ 02-2180-7952

e-mail : hong1004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